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			제출	·년월	일 : 20	022. 11. 9.
번호	9-59		제	출	자 : 안	산 시 장
ि यो ठ े	Lal o					
∐ 제인	난이유					
	지역사랑상품권	법 이용 활성	화에 관한 법	률」 7	개정(20	022. 4.20
시	행)에 따라 조리	계로 정하도록	위임한 사항	을 [안산시	지역화폐 빌
행	및 운영에 관한	·조례」를 일부	- 개정하여 반영	하고	자 함	
□ 주요	L내용					
○ 안	산화폐의 자금된	관리 주체 명시	, 유효기간 내	에 시	사용되지	이 않고 남은
안,	산화폐 금액・은	근영과정에서 특	발생하는 이자들	를 시	수입으	그로 귀속 및
활.	용 등 관련 조	계 위임사항 변	난영 (안 제4조	<u>의</u> 2))	
] 1]]	. HAI				
]조례안	: 붙임				
□ 신·	구조문대비	표 : 붙임	2			
□ 관계	l법령발췌서	: 붙임	3			
□ 관련	년사업계획서	: 해당염	없음			
□ 예신	· 수반사항	: 해당(없음			
_ t	비용추계서 미	첨부 사유서	: 붙임 4			
□ 사전]예고(결과)	: 의견	없음			
	입법예고기간	: 2022. 9.	16. ~ 10.	6.(20일7	<u>'</u> })
□ 기目	ት 참고사항					
\bigcirc .	현행조례	: 붙임	5			
	방침결정문	: 붙임	6			

【붙임 1】

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조의2(안산화폐의 자금관리) ① 시장은 사용자가 안산화폐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,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안산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안산화폐를 발행·판매·환전하기 위한 자금(이하 "안산화폐 운영자금"이라 한다)을 보관·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안산화폐 운영자금을 시금고에게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관한 법률」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안산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 재정으로 귀속하고, 다음 연도 안산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.
 -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안산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 - ④ 시장은 반기별로 안산화폐 운영자금의 보유·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경제일자리과		
입	실·과장 직위·성명	경제일자리과장 조 영 일		
안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상권육성팀장 황 유 경		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김 현 지 (행정 2921)		

【붙임 2】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〈신 설〉</u>	제4조의2(안산화폐의 자금관리) ① 시장은 사용자가 안산화폐를 구매 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, 유효기간
	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안산화폐
	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
	등 안산화폐를 발행·판매·환전하기
	위한 자금(이하 "안산화폐 운영자금"
	이라 한다)을 보관·관리하기 위한
	계정을 시금고에 설치·운영하여야
	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안산
	화폐 운영자금을 시금고에 계정을
	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
	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
	관한 법률」 제4조의2에 따라 신탁
	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
	<u>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</u>
	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
	남은 안산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
	발생하는 이자는 시 재정으로 귀속
	하고, 다음 연도 안산화폐 발행사업에
	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.
	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
	주기적으로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
	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안산화폐
	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

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④ 시장은 반기별로 안산화폐 운영
자금의 보유·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